

※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청약연습을 실시 후 청약을 진행하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■ 일반공급 청약 일정 및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

구분	일시		방법	장소
일반공급 청약신청	1순위(해당)	2022.05.10.(화)	인터넷청약 09:00 ~ 17:30 (PC 또는 스마트폰)	한국부동산원 '청약 Home'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
	1순위(기타)	2022.05.11.(수)		
당첨자 서류 제출	2022.05.20(금)~05.25(수) (문자 또는 유선)		건본주택 접수 (변경 시 별도 유선 또는 문자 안내)	건본주택 :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509 금곡역한신더휴

■ 일반분양 대상 세대수

구분	30A	30B	44	59A	59B	59C	65	75	80A	80B	84A	84B	84C	합계
일반분양	4	14	20	4	23	4	8	6	6	1	4	1	1	96

■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

순위	주택형	신청자격	거주구분
1순위	전용 85㎡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용면적 85㎡ 이하 : 가점제 75%, 추첨제 25%(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)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.(가점제 접수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.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.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.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지역_ 남양주시(1년 이상 계속 거주자) 기타_ 서울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
2순위	추첨제 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도 및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성년자 /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·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(포함)에 가입한 자 	

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상세내용
신청자격	<p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(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)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.</p> <p>※ 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
청약신청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표초상소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. -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"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"이며 면적은 "전용면적"을 기준으로 합니다. -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(1인 1건만 신청 가능)하며,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. -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,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. (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) -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[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 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과열지역은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촉지역 3개월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] -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-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. -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.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: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.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(주택청약종합저축)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.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(전용면적 기준) 변경한 분 신청 요건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(단,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)

■ 지역별 청약 예치금 안내

구분	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금곡역 한신더휴(남양주시)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
모든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

■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[별표1]의 나목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 기간	32	만 30 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	0	8 년 이상 ~ 9 년 미만	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■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 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※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 년 미만(무주택자에 한함)	2	9 년 이상 ~ 10 년 미만	20	
		1 년 이상 ~ 2 년 미만	4	10 년 이상 ~ 11 년 미만	22	
		2 년 이상 ~ 3 년 미만	6	11 년 이상 ~ 12 년 미만	24	
		3 년 이상 ~ 4 년 미만	8	12 년 이상 ~ 13 년 미만	26	
		4 년 이상 ~ 5 년 미만	10	13 년 이상 ~ 14 년 미만	28	
		5 년 이상 ~ 6 년 미만	12	14 년 이상 ~ 15 년 미만	30	
		6 년 이상 ~ 7 년 미만	14	15 년 이상	32	
7 년 이상 ~ 8 년 미만	16					
② 부양 가족수	35	0 명	5	4 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표등·초본 ■ 가족관계증명서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■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(1) 만18세 이상 ~ 만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(2) 만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출입국사실증명서
		1 명	10	5 명	30	
		2 명	15	6 명 이상	35	
		3 명	20	-		
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17	6 월 미만	1	8 년 이상 ~ 9 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)
		6 월 이상 ~ 1 년 미만	2	9 년 이상 ~ 10 년 미만	11	
		1 년 이상 ~ 2 년 미만	3	10 년 이상 ~ 11 년 미만	12	
		2 년 이상 ~ 3 년 미만	4	11 년 이상 ~ 12 년 미만	13	
		3 년 이상 ~ 4 년 미만	5	12 년 이상 ~ 13 년 미만	14	
		4 년 이상 ~ 5 년 미만	6	13 년 이상 ~ 14 년 미만	15	
		5 년 이상 ~ 6 년 미만	7	14 년 이상 ~ 15 년 미만	16	
		6 년 이상 ~ 7 년 미만	8	15 년 이상	17	
		7 년 이상 ~ 8 년 미만	9			
총점	84					

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 ※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(노무모특별공급 제외)

※ 상기 안내 내용은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